

## 국민취업지원 종료처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(보관기간 경과로 반송)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16.

###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 종료처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, 제29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제1호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박O수	'92.06.18.	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 종료처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	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 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로 반송

4. 공고기간: 2026.6.16. ~ 2026.6.30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최효주(Tel. 042-480-399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